

2014년

정책자료집 ②

체육시설 안전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2014. 1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

<간지>

I. 체육시설의 종류 및 현황	06
1.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06
2. 체육시설의 구분 및 현황	06
II.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09
1.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기준	09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09
III.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15
IV. 체육시설업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19
1. 소방시설설치 대상인 체육시설업	19
2. 소방시설 설치기준	20
V. 대한민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흐름과 현황	22
1. 국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2
2. 1990년대 이후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흐름	24
3. 현 정부의 체육시설 안전 관련 정책	26
VI. 해외 주요 국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28
1. 미국의 사례	28
2. 독일의 사례	29
VII. 체육시설 안전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도입	32
1.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	32
2.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	34
3.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34
4.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선	35

< 요약 문 >

2014년의 대한민국은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 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4월 16일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10명 사망, 204명 부상의 사고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는 직접적 원인이 폭설이었으나 대한민국 안전관리체계의 부실을 여전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 이후 체육시설의 안전진단, 관리, 점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다수 시설의 관리 감독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꺾하기 어려우며 일부 체육시설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설의 건립 지원과 활용에 집중할 뿐 안전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보고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현행 체육시설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체육시설 안전 관리 체계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향후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관리, 감독, 통계구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마우나리조트 사고에서 보여준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출발했으나 더 큰 문제는 이후 정부의 대응에 있다. 대학교 신입생환영행사 폐지 같은 당면한 비판을 피하려는 교육부의 대증요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에 의거해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직은 미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본 보고서는 체육시설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 및 안전 제고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추진되어야 다양한 체육시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첨언을 드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향후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 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I. 체육시설의 종류 및 현황

1. 체육시설의 의의 및 종류

-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구분 및 현황

- 체육시설은 설치·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직장의 장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음

가.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에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직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함(「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

<2013년 공공 체육 시설 현황>

시설항목	전국
개소	
합계	19,398
1. 육상경기장	236
2. 축구장	801
3. 하키장	15
4. 야구장	169
5. 사이클경기장	12
6. 테니스장	660
7. 씨름장	45
8.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14,536
9. 체육관	819
구기체육관	355
투기체육관	46
생활체육관	418
10. 전천후게이트볼장	1,090
11. 수영장	334
12. 롤러스케이팅장	140
13. 사격장	22
14. 국궁장	249
15. 양궁장	21
16. 승마장	17
17. 골프연습장	73
18. 조정카누장	11
19. 요트장	17
20. 빙상장	21
21. 설상경기장	3
22. 기타 시설	10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기준)”

나. 민간체육시설

- 민간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 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업용 체육시설이 있음¹⁾
-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위 상업용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

1)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기준), 2014.

하고, 체육시설업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이 있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0조)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 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표 전국 등록 체육시설 현황>

시설항목	전국
	개소
합계	56,124
1. 골프장	465
2. 스키장	19
3. 자동차 경주장	3
4. 요트장	19
5. 조정장	0
6. 카누장	1
7. 빙상장	41
8. 승마장	166
9. 종합 체육시설	255
10. 수영장	591
11. 체육도장	13,905
12. 골프 연습장	9,779
13. 체력단련장	6,991
14. 당구장	22,655
15. 썰매장	142
16. 무도학원	1,011
17. 무도장	8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II.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인구기준 등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표 3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는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1. 공통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2) 안전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시설	○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

다. 요트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절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절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 체육시설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2) 임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	--

차. 체육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	---------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파. 당구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 썰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는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1. 공통기준

-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4) 체육시설업의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 (2)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승·하차 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탐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탐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잔류염소일 때에는 1.0mg/l 이상)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mg/l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인 것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썰매장업

-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Ⅳ. 체육시설업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1. 소방시설설치 대상인 체육시설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서 다음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음

<표> 특정소방대상물

- | |
|--|
| 1. 공동주택 (생 략) |
| 2. 근린생활시설 |
| 가. ~ 라. (생 략) |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 바. ~ 타. (생 략) |
| 3. 문화 및 집회시설 ~ 10. 수련시설 (생 략) |
| 11. 운동시설 |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
| 12. 업무시설 ~ 13. 숙박시설 (생 략) |
| 14. 위락시설 |
| 가. ~ 다. (생 략) 생 |
|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
| 마. (생 략) |
| 15. 공장 ~ 30. 복합건축물 (생 략) |

- 위 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음

(1) 근린생활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만 해당)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위락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위 별표 5에 따라 체육시설업이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²⁾

- 근린생활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 · 탁구장 · 볼링장 · 헬스클럽장 또는 정구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업
- 체력단련장 · 당구장 · 골프 연습장 · 테니스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실내 낚시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업

- 운동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 · 당구장 · 골프연습장 · 탁구장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실내낚시터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체육시설업
-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업
- 운동장 : 수영장 · 육상경기장 · 구기경기장 · 볼링장 · 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 승마장 · 사격장 · 궁도장 ·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업

- 위락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2) [참조 1] 등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체육시설 설치·운영(2014년 6월 15일 기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2&ccfNo=3&cciNo=3&cnpClsNo=1#92.3.3.1.132756>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V. 대한민국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 흐름과 현황

1. 국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³⁾

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되,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경기 개최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에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⁵⁾하도록 하고 있음⁶⁾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 광명돔경륜장 등 각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⁷⁾
-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시설물에 대해 연 6회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함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전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상·하반기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음

3)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의 체육시설 안전제도 및 정책은 각 홈페이지와 문헌 검색 결과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4.1.14 법률 제12248호\]](#)

5)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 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함

6) 문화체육관광부. (2013.9). 2012 체육백서, 461.

7) 국민체육진흥공단. (2013). 2012 KSPO 지속가능보고서, 35.

- 시설관리자와 직원의 위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상황별 안전교육(50회 2,122명)을 실시하고, 온라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2년 시설물 안전등급은 평균 B등급(양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음

<표> 안전저해 요소별 비상훈련 실적

기상이변	전력중단 및 화재발생	시설물 붕괴 위험	응급상황발생
· 장마철 수해 및 풍수 · 동절기 폭설대비 훈련 · 번개, 폭우 시 요령	· 고객안전 확보, 정전상황 복구 · 구조소방 훈련	· 붕괴 시 시설별 안전 피난루트 점검 훈련 · 고객이동 동선 점검	· 상황별 대응 요령 · 관계당국·경찰 등 협력 합동 훈련
7회 762명	25회 550명	7회 248명	11회 562명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3). 2012 KSPO 지속가능보고서, 35.

2. 1990년대 이후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흐름

- 정부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기존 엘리트체육 육성정책에서 전환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옴⁸⁾
- 1990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 계획)’과 1993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선의 정책적 토대가 됨
- 행정안전부는 ‘2003년 하·동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모험레포츠 시설(레프팅, 번지점프)과 스키장 안전 대책 계획을 발표함⁹⁾

8)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체육백서, 435-436.

9) 행정자치부. (2003). 2003 동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계획.
행정자치부. (2003). 2003 하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계획.

- 2004년 12월 14일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현재보다 30%~50%까지 줄이고 향후 10년 내에 재산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¹⁰⁾
 - 기존의 재난에 관한 계획이 방재계획과 재난관리계획만 수립되어 있어 재난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자원부·통일부·보건복지부·건교부 등 22개 중앙부처(청)가 참여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함
 -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레저스포츠,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능 강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대책을 세움
- 2006년 10월,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¹¹⁾하는 등 2000년대까지의 체육시설 관련 정책은 시설의 공급에 중점을 둠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공공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설치 후 체육시설과 관련된 홍보가 미흡하여 지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건립 후 꾸준한 관리·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활용도와 만족도가 민간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2007년 5월 2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¹²⁾
 -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3~4월에 실시한 유원시설, 체육·문화시설 안전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여름철 물놀이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계획함

10) 국가기록원 > 국정분야별검색 > 재난방재민방위 > 국가재난관리 > 재난관리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1)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체육백서, 439.

12) 국무조정실. (2007.5.23). [보도자료] 범정부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 시달.

- 2009년 12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을 심의·의결함¹³⁾
-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등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레저·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의해 계획함¹⁴⁾

<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주요 대책

○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자 자체 안전교육 실시
- 골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스키장 안전점검 실시
- 스키장, 수영장 등 관리자 자체교육
○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등 제도개선
- 연구용역을 통한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선방안 마련
-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 「레저스포츠진흥법」제정을 통한 안전 및 시설기준 마련
-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009년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9년도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과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함¹⁵⁾
- 다중이용업소 재난예방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격장이나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변종 및 겸업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0년부터 체육

13) 재난포커스. (2010.1.11).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분석-‘안전선진국’ 위해 5년간 49조원 투입.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2010).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30-131.

15) 소방방재신문. (2010.1.11). 정부,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 확정.

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음¹⁶⁾

- 주요 내용은 1번 국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부분에서 제시함

3. 현 정부의 체육시설 안전 관련 정책

- 2013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 등의 성수기에 사고 빈도가 높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 실태조사 및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함¹⁷⁾
-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 실태조사는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회 상정 중인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이라도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기본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 및 시행하기로 함
- 2013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¹⁸⁾하고, 2014년 4월 1일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함
- 2014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함¹⁹⁾
- 스포츠용품의 품질을 비교하고, 소비자들의 프로파일 조사 등을 담은 ‘스포츠슈머리포트(Sposumer Report)’가 분기별로 발간될 예정임
- 스포츠안전대책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여 스키, 수영, 골프 등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업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200명 규모의 민간 체육시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상반기

16)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0 체육백서, 334-335.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 체육백서, 518.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체육백서, 461.

17) 문화체육관광부. (2013.7.31). [보도자료] 문체부,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18) 문화체육관광부. (2013.10.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9) 문화체육관광부. (2014.2.26). [보도자료]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내에 스포츠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2014년 5월 7일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²⁰⁾
 -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기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
 - 이와 함께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수·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20) 문화체육관광부, (2014.5.16). [보도자료]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Ⅵ. 해외 주요 국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1.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체육시설의 안전을 전담하여 통합관리하는 기관이나 이에 관한 법률 찾기 어려웠으며 연방법상 체육시설의 통합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도 찾기 어려웠음.
- 국립공원(National Park)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내에 국립공원 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 관리함.²¹⁾
- 국립공원의 안전관리는 국립공원관리청에서 담당하나 그 외의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찾을 수 없었음.
- 체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연방법으로 2007년 제정된 「버니지아 그레이미 베이커 수영장 및 스파 안전에 관한 법률(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²²⁾ 등이 있으나 이는 체육시설의 통합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아님.
- 체육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었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 “여가활동안전(Recreational Safety)”에 관한 주법을 제정하고 있고 여기서는 시설별로 일정한 안전규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²³⁾
- 일반적으로 체육시설(recreation center)²⁴⁾은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관리 및 운영함.
- 각 시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대부분의 경우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이란 명칭의 기관임)을 설치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 내 최초로 공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기관을 설치한 로스엔젤레스 시의 경우에

21) 16 U.S.C. §§ 1 - 18f-3.

22) Pub.L. 110-140 (15 U.S.C. §§ 8001-8007). 전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 3세의 손녀인 그레이미 베이커가 2002년 6월에 수영장의 배수구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입법됨. 모든 수영장과 스파의 배수구커버가 ASME/ANSI 안전규격에 따라 제조되고 설치될 것을 의무화함.

23) Cal.Health & Safety Code D. 104, Pt. 10.

24) 시민회관(Community Center)도 체육시설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Department of Recreation & Parks에서 공원, 호수, 골프장, 수영장 등을 운영함.²⁵⁾

- 다만, 이러한 기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및 관리 하는 것일 뿐 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까지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2. 독일의 사례

가. 개요

- 독일의 경우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는 각 주(Länder)가 담당하며 기본 사례는 브란덴 부르크주(Land Brandenburg)가 있음.
- 브란덴 부르크주(Land Brandenburg)는 체육촉진법²⁶⁾(Sportförderungsgesetz Brandenburg: 이하 SportFGBbg)을 통해 체육시설 통합 안전관리를 위해 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음.²⁷⁾
-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 ▶ 검사 일과 장소
 - ▶ 결함이 표시되어 있는 검사 결과
 - ▶ 판단 소견
 - ▶ 필요한 재심사에 관한 진술
 - ▶ 심사자의 이름, 주소 및 서명
- 연습 감독자는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아래와 같이 점검해야함:
 - ▶ 사용하기 전 결함이 있는지 또는 올바르게 기능하는지에 관해 점검
 - ▶ 사용시 위험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결함이 있는 시설 및 기구가 있는지에 관해 점검

25) <http://www.laparks.org/index.htm>

26) Vom 10. Dezember 1992 (GVBl.I/92, [Nr. 26], S.498),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1 des Gesetzes vom 18. Dezember 2007. 동법은 1992년 12월 10일 제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18일 최종 개정됨.

27) § 5 Abs. 3 SportFGBbg.

- ▶ 체육 활동을 위한 연습에 관해 점검
- 점검 원인규명을 통해 확증된 결함은 전문 감정인에게 통보해야함.
-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 시설은 다음과 같음:
 - ▶ 기어오르기 시설의 줄은 5.50m 높이 이하로 함.²⁸⁾
 - ▶ 농구대시설의 높이는 2900mm 이하이고 적어도 원형은 3mm임.²⁹⁾
 - ▶ 멀리뛰기 모래사장 앞 출발선은 적어도 1m이고 모래사장은 적어도 8m 길이와 2,75m 폭으로 함.³⁰⁾
- 체육시설 통합 안전 관리를 위해 독일은 표준규정(DIN)³¹⁾을 시행하고 있음.

나. 표준 규정(DIN)

- DIN 7892, 7901, 7903, 7908, 7910, 7911-1, 7911-2, 7915-1 체조기구-안전 검사
- DIN 7899 농구장 시설
- DIN 7900 축구시설-규격
- DIN 18 032-1 스포츠-홀 실내경기장-다목적용
- DIN 18 032-4 스포츠-홀 체조 경기장-다목적용
- DIN 18 035-1 스포츠 홀
- DIN EN 748 축구골대
- DIN EN 749 핸드볼골대
- DIN EN 750 하키기구 및 골대
- DIN EN 913, 914, 915, 916 체조기구
- DIN EN 1270 농구시설-안전 검사

28) Sportstätten und Sportgeräte, GUV-SI 8044, S. 7.

29) Sportstätten und Sportgeräte, GUV-SI 8044, S. 12.

30) Sportstätten und Sportgeräte, GUV-SI 8044, S. 15.

31) Sportstätten und Sportgeräte, GUV-SI 8044, S. 16.

- DIN EN 1271 배구 경기장 및 기구
- DIN EN 1509 배드민턴 경기장 및 기구-안전 검사
- DIN 12 196 장애물 승마 경기장 및 기구-안전 검사
- DIN 12 197, 12 346, 12 432, 12 655, 13 219 체조-안전 검사
- DIN 14 468-1, 14 468-2 탁구-안전 검사 표준규정이 있음.³²⁾

32) Sportstätten und Sportgeräte, GUV-SI 8044, S. 16.

VII. 체육시설 안전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도입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2월)와 세월호 참사('14.4월)를 계기로 범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되었지만 바른 대책이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까지 정부는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건축시 안전 기준 위반, 사후 관리 등이 지자체에 일임되어 있는 상황아래 체육시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점검해 나가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한편, 미국, 독일의 경우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보단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음.
-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체육시설과 관련한 안전점검·관리에 공백을 줄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

- (통합시스템 부재 및 관리공백)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및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 지자체에 위임되어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능이 빈약하며, 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

⇒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시설이 대다수인 체육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으로 안전관리 공백 초래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관련 정책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문체부 소관으로 관리 일원화 필요

- * 안전관리 수행의 체계적 협조체계 조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관리기관 지정 및 문체부와 관리기관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 (공공+민간 통합관리 필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을 구분할 실익이 적고, 공공체육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민간시설에 비해 관리실태가 비교적 양호
 - 공공 체육시설은 민간에 비해 관리인력·기술·예산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

⇒ 민간체육시설을 포함하는 '체육시설'의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중소규모 체육시설 관리공백 해소) 바닥 연면적 1,000㎡ 미만·연면적이 5,000㎡ 미만인 중소규모 체육시설은 안전점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전반을 총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필요
- (신규업종 관리공백) 체시법의 적용대상인 신고체육시설 업종이 현행법상 14종으로 열거되어, 스크린골프장 등 신규업종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신고체육시설 업종확대를 위한 다수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중으로, 신규업종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령개정을 하거나, 문체부 고시를 통해 법령개정전이라도 안전점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 (종목별 안전·위생 기준 부실)
 - 체시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에 의거 업종별 안전·위생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이고,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실효성 확보 미흡
 - 종목별 안전·위생기준 정교화 및 구체화 필요
 - * 안전기준 정교화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추진중(공단 기술직 2명 파견 지원)
- (법이행 관리시스템 부재) 체시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법적이행사항 관리

시스템 부재

- 체시법에 제23조, 제26조, 제40조에 의거 체육시설 관리자에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체육지도자배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이행 확인시스템 부재
- 체육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체육시설관리주체에 대한 홍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리강화 필요
 - * 체육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년도 예산반영 추진(20억원)
- 손해보험협회와 연계하여 보험가입 및 해지사실의 실시간 조회, 공단 체육지도자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여부 확인 등 필요

2.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문화부의 체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15년 추진)을 통해 시스템과 안전점검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연간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교육 공고 등의 일원화 된 창구로 관련 주체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 시설 별 안전지수 자동경고 및 알람체제로 한정된 예산 내에 선제적·집중적 안전예방 체계 가능
- 시설별 점검결과 등록 및 등급 분류에 따른 후속조치 이력관리 모니터링 체계로 안전관리 효과 극대화
- 우리 동네 시설 안전지수 현황 공개로 대국민 체육시설 이용 불안감 제거 및 홍보 가능

3.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 우수 관리 소유주 건물에 대한 안전 인증 명패 부착으로 임대 수익 제고 시너지 유도
- 시설물 관리 이력 우수 관리주체 선발 및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비용 지원

으로 자발적 관리 유도 등

4.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선

- 안전 점검역량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이수교육의 추진
- 점검 매뉴얼 등 보완을 통한 자체점검 체계 강화
-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 시행
- 재난·안전 관련교육 강화 : 내·외부 교육 집중 시행(지속)
- 외부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및 교차점검 방식 확대 시행으로 기술인력간 노하우 공유 체계 강화 등